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B-1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31세대 (전용면적 84㎡A 238세대, 84㎡B 96세대, 84㎡C 97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안내

- ※ 2022.04.22.(금) 공고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B-1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 변경 전 입주자모집공고(30P) → 변경 후 입주자모집공고(30P)

###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BL 단지의 초등학생은 한여울초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교의 경우 장곡중학교(시흥가온중, <b>능곡중</b> , 장곡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구(군)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BL 단지의 초등학생은 한여울초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교의 경우 장곡중학교(시흥가온중, <b>웅곡중</b> , 장곡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구(군)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사항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약 신청자는 방문예약제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을 통한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실물 유니트를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물 유니트는 84㎡A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Ⅶ.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분양상담 전화 (031-311-043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업지는 공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중도금 대출이 총 분양대금의 50%이내에서 대출 가능함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인 중도금 6회차(10%)는 자격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총 분양대금의 50%의 범위에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시공사가 대납하며, 입주예정자는 입주시 이자총액을 입주지정기간 말일까지 시공사에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침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대상 최대 60%까지 대출 가능한 경우에도 시공사는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하여 대납하며, 시공사에 추가 대납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금리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보증 취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 용자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중도금대출을 LTV 최대비율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환대출 용자 포기 확인서 미제출시 중도금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235입니다.

■ 주택전시관은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되며, 입주자모집공고는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시흥장현 B-10블록은 디엘건설 주식회사 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사용합니다.

■ 동 조합에 따른 일부세대(84A)는 현관 전면과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마주보는 세대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기준 특별공급+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일반공급 중복 접수 시 중복청약에 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 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기도 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1.04.22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21.04.22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시흥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6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2에 의거해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입주가능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관련안내**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일자를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해당,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2.05.02.(월)	2022.05.03.(화)	2022.05.04.(수)	2022.05.12.(목)	2022.05.13.(금) ~2022.05.18.(수)	2022.06.20.(월) ~2022.06.24.(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접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li> <li>※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접수장소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li> <li>※ 상기 장소는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li> </ul>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현장방문접수(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 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B-10블록)는 청약과열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b>10년간</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 규모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B-10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하2~지상25층 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431세대 (특별공급 364세대, 일반공급 67세대)

### 2. 공급대상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B-10블록)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m <sup>2</sup> )						세대별 대지지분 (m <sup>2</sup>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계)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합 계											431	43	129	107	21	21	43	67	18	
2022-000235	01	084.9875A	84A	84.9875	24.9018	109.8893	5.1018	47.2040	162.1951	60.3643	238	23	72	59	11	11	23	39	10	
	02	084.9892B	84B	84.9892	26.2310	111.2202	5.1019	47.2050	163.5271	60.3655	96	10	28	24	5	5	10	14	4	
	03	084.9903C	84C	84.9903	24.4584	109.4487	5.1019	47.2056	161.7562	60.3663	97	10	29	24	5	5	10	14	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마감시간 전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4년 8월로 예정되어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와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임건설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3. 공급금액 (분양대금)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타입	동	층별	세대수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0%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6차 중도금 10%	잔금(30%)			
													용자금 제외금액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입주 시			
084.9875A	84A	1001~1004	1층	4	455,760,000	45,576,000	45,576,000	45,576,000	45,576,000	45,576,000	45,576,000	45,576,000	45,576,000	61,728,000	75,000,000	
			2층	10	460,610,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46,061,000	63,183,000	75,000,000
			3층	10	478,560,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47,856,000	68,568,000	75,000,000
			4층	10	480,010,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48,001,000	69,003,000	75,000,000
			5층 이상	204	484,860,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48,486,000	70,458,000	75,000,000
084.9892B	84B	1001~1004	1층	2	449,650,000	44,965,000	44,965,000	44,965,000	44,965,000	44,965,000	44,965,000	44,965,000	44,965,000	59,895,000	75,000,000	
			2층	4	454,440,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45,444,000	61,332,000	75,000,000
			3층	4	472,150,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47,215,000	66,645,000	75,000,000
			4층	4	473,580,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47,358,000	67,074,000	75,000,000
			5층 이상	82	478,370,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47,837,000	68,511,000	75,000,000
084.9903C	84C	1001~1004	1층	4	433,90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55,170,000	75,000,000
			2층	4	438,520,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43,852,000	56,556,000	75,000,000
			3층	4	455,610,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45,561,000	61,683,000	75,000,000
			4층	4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62,100,000	75,000,000
			5층 이상	81	461,610,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46,161,000	63,483,000	7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시흥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보증 취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 용자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중도금대출을 LTV 최대비율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환대출 용자 포기 확인서 미제출시 중도금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시흥도시공사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시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4.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 ■ 발코니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84A	4,436,000	700,000	3,736,000
84B	3,928,000	700,000	3,228,000
84C	5,156,000	700,000	4,456,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각 주택형별 발코니확장 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와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농협은행	시흥도시공사
잔금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품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무상선택(가변형) 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 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선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



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 ※ 추가 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 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II)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II)는 발코니 확장형 계약세대만 옵션선택이 가능합니다.

(1) 평면 선택형

- 확장 기본형 이외의 평면선택형을 선택하는 세대는 일부 추가선택품목(II)에 대한 옵션 선택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침실 및 거실 가변	84A	확장 기본형 (거실+침실1,2,3)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참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판매가격 포함)	침실2 불박이장, 디자인 패널, 우물천장 조명 옵션선택 불가	택 1	
		거실, 침실2 통합형				침실2 불박이장 옵션선택 불가
		침실2, 침실3 통합형				
	84B	확장 기본형 (거실+침실1,2,3)		침실2 불박이장, 디자인 패널, 우물천장 조명 옵션선택 불가	택 1	
		거실, 침실2 통합형				침실2 불박이장 옵션선택 불가
		침실2, 침실3 통합형				
84C	확장 기본형 (거실+침실1,2,3)	침실2 불박이장, 복도 화장대 옵션선택 불가		택 1		
	세컨 마스터룸형				침실2 불박이장, 복도 화장대 옵션선택 불가	
	침실2, 침실3 통합형					
욕실 공간 구성	84A	확장 기본형 (부부욕실 샤워부스 + 공용욕실 욕조 설치)		택 1		
		부부욕실 샤워부스 + 공용욕실 샤워부스 설치				
	84B	확장 기본형 (부부욕실 샤워부스 + 공용욕실 욕조 설치)			택 1	
		부부욕실 샤워부스 + 공용욕실 샤워부스 설치				
	84C	확장 기본형 (부부욕실 샤워부스 + 공용욕실 욕조 설치)	택 1			
		부부욕실 샤워부스 + 공용욕실 샤워부스 설치				
양방향 팬트리	84A	확장 기본형 (현관 팬트리)	700,000	- 거실 아트월 세라믹패널 마감옵션 선택불가 - 냉장고장 및 아일랜드장 설치위치 변경(해당 옵션 선택시) - 주방벽 아트월 미설치(냉장고장(옵션) 설치공간 확보)	택 1	
		양방향 팬트리 (현관 및 주방 양방향 가구도어설치)				

- ▶ 84A, 84B형의 거실, 침실2 통합형 평면선택시 거실 우물천장 디자인 및 크기, 등기구 설치위치 및 개수, 콘센트 등 배선기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됩니다. 아울러 침실2용 실별 온도조절기 및 전등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84A, 84B형의 거실, 침실2 통합형 선택시 침실2용 온도조절기, 등기구, 스위치, 배선기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전 주택형 침실2, 침실3 통합형 선택시 배선기구 위치가 변경되며, 통합형 평면 선택시에도 목창호 및 실별 온도조절기, 등기구, 스위치는 각각 설치됩니다.
- ▶ 84C형 세컨 마스터룸형 평면 선택시 가족실 공간은 출입용 도어(목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개방된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아울러 침실간 벽, 침실3 목창호, 등기구,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설치위치가 변경됩니다.
- ▶ 84C형 세컨 마스터룸형 평면 선택시 공용욕실이 세컨 마스터공간(침실3)으로 부속되어 설치되며 세대 공용공간(거실복도)에서 직접 출입이 불가능 하여, 욕실 사용상 제약 및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C형 세컨 마스터룸형 평면 선택시 침실3 워크인 드레스룸 가구도어 설치위치,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 선반 형태 및 수납구성이 변경됩니다.
- ▶ 욕실 공간구성에서 부부욕실은 공간구성 선택이 불가(부부욕실은 샤워부스만 설치) 합니다.
- ▶ 공용욕실 공간구성 선택형(욕조 또는 샤워부스)에 따라 욕실 천장재의 형태 및 점검구, 환기디퓨저, 복합 환풍기(옵션)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양방향 팬트리 옵션선택시 양방향(현관 및 주방)에 가구도어 설치로 인해 팬트리내 물건 수납 및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시 월패드, 거실 및 주방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주방 등기구 등의 배선기구와 공기질 센서, 주방 환기 디퓨저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됩니다.
- ▶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세대는 주방 냉장고장 및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위치가 확장 기본형세대 설치위치의 반대편으로 변경되며, 냉장고장(옵션) 설치공간 확보로 인해 주방부위 아트월(기본 : 디자인월 / 옵션 : 세라믹패널)이 시공되지 않고 도배지로 마감됩니다.(거실 아트월 세라믹패널 마감옵션 선택 불가)
- ▶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시 사용 편의성을 위해 팬트리 바닥 높이가 변경되며(거실 및 주방과 동일한 바닥높이로 변경), 가구도어 하부에 엔지니어드스톤 디딤판 설치로 인해 가구도어 하부 스토퍼가 미설치 됩니다.(스토퍼 미설치로 도어 밀림이 발생할 수 있음)
- ▶ 양방향 팬트리 내부의 시스템선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바뀔수 있으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시 월패드 및 거실 스위치, 해당 배선기구가 설치된 경량벽체가 침실1 문옆으로 같이 이동설치되며, 복도 벽체(벽 패널 마감 포함) 너비가 변경(축소) 됩니다.
- ▶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시 식탁배치 공간이 확장 기본형의 반대편(복도쪽)으로 변경되며, 식탁배치로 인한 간섭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주방쪽 팬트리 도어 사용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의 경우 양방향 팬트리 옵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세대 통신단자함이 팬트리 내부 시스템 선반쪽 벽면으로 설치됩니다.(84B, 84C 타입은 해당 옵션 미적용으로 팬트리 안쪽 벽면에 설치예정)
- ▶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시 주방쪽 팬트리 도어 양옆 벽면은 패널(팬트리도어 PP시트 마감/디자인월 마감은 미적용)로 마감됩니다.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제조사	설치위치	판매가격	비고	
84A	LG전자	거실 + 침실1	3,900,000	거실/주방(18평)+침실1(8평)/실외기(5HP)	택 1
	LG전자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100,000	거실/주방(18평)+침실1(8평)+침실2(4평)+침실3(4평)/실외기(5HP)	
84B	LG전자	거실 + 침실1	3,900,000	거실/주방(18평)+침실1(8평)/실외기(5HP)	택 1
	LG전자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100,000	거실/주방(18평)+침실1(8평)+침실2(4평)+침실3(4평)/실외기(5HP)	
84C	LG전자	거실 + 침실1	3,900,000	거실/주방(18평)+침실1(8평)/실외기(5HP)	택 1
	LG전자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6,100,000	거실/주방(18평)+침실1(8평)+침실2(4평)+침실3(4평)/실외기(5HP)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LG전자 제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격은 거실 냉매배관, 침실 냉매배관 및 콘센트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선택시 거실(스탠드형) 냉매배관, 침실(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일반 에어컨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침실(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부위의 우물천장 크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배관용 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천장단열재 추가설치에 따른 에어컨 설치공간(천장 깊이) 확보 불가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경우 발생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판매가격	비고	
<b>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b>						
주방 냉장고장	84A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키큰수납장	1,200,000	경량벽 추가설치비용 포함	
	84B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키큰수납장	1,200,000		
	84C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키큰수납장	1,200,000		
냉장고장 + 비스포크냉장고	84A	삼성전자	냉장고장 +1도어키킨핏냉장408ℓ(RR40A7(9/8)95AP) +1도어키킨핏변온240ℓ(RZ24A5(9/8)G0AP) +1도어키킨핏김치347ℓ(RQ34A7(9/8)45AP)+팬트리장(W800)	7,6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일부) 및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주택형별 택1
	84B		냉장고장 +1도어키킨핏냉장408ℓ(RR40A7(9/8)95AP) +1도어키킨핏변온240ℓ(RZ24A5(9/8)G0AP) +1도어키킨핏김치347ℓ(RQ34A7(9/8)45AP)+팬트리장(W800)	7,6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일부) 및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84C		냉장고장 +1도어키킨핏냉장408ℓ(RR40A7(9/8)95AP) +1도어키킨핏변온240ℓ(RZ24A5(9/8)G0AP) +1도어키킨핏김치347ℓ(RQ34A7(9/8)45AP)+팬트리장(W800)	7,6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일부) 및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냉장고장 + 오브제냉장고	84A	LG전자	냉장고장 +오브제 4도어 냉장고(BC4S1AA1) +오브제 3도어 김치냉장고(BC3K1AA1) +팬트리장	8,3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일부) 및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84B		냉장고장 +오브제 4도어 냉장고(BC4S1AA1) +오브제 3도어 김치냉장고(BC3K1AA1) +팬트리장	8,3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일부) 및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84C		냉장고장 +오브제 4도어 냉장고(BC4S1AA1) +오브제 3도어 김치냉장고(BC3K1AA1) +팬트리장	8,3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일부) 및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b>확장 기본형 주방가구에 선택 가능</b>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전주택형	LG전자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BEY3GTBI)	1,000,000	- 기본제공 SK매직 4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 반영 - 전기관련추가 및 가스차단장치 추가설치비용 반영 (GRA-BI322H 제품은 가스차단장치 제외)	택 1
		SK매직	인덕션 2구 + 가스 1구 (GRA-BI322H)	850,000		
		LG전자	인덕션 3구 (BEI3GTBI)	1,200,000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950,000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LG전자	식기세척기 12인용 (DUB22SB2)	1,160,000	확장기본 제공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반영 및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택 1
		SK매직	식기세척기 12인용 (DWA-81R5B)	1,090,000		
쌀냉장고	84C	파세코	쌀냉장고(PRR-B068EN)	450,000	확장기본 제공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b>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84C타입 쌀냉장고 옵션만 제외)</b>						
주방 아일랜드장	84A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	1,600,000		
	84B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양념서랍장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	1,950,000		
	84C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	1,350,000		
아일랜드장 + 전기오븐	84A	LG전자	광파오븐(MZ385EBTA) + 아일랜드장	1,980,000	아일랜드장내 전기오븐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주택형별 택1
		삼성전자	전기오븐(NQ36A6555CK) + 아일랜드장	1,950,000		
		SK매직	스팀오븐(EON-B401SA) + 아일랜드장	2,250,000		
	84B	LG전자	광파오븐(MZ385EBTA) + 아일랜드장	2,330,000	아일랜드장내 전기오븐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삼성전자	전기오븐(NQ36A6555CK) + 아일랜드장	2,300,000		
		SK매직	스팀오븐(EON-B401SA) + 아일랜드장	2,600,000		
84C	LG전자	광파오븐(MZ385EBTA) + 아일랜드장	1,730,000	아일랜드장내 전기오븐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전자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삼성전자	전기오븐(NQ36A6555CK) + 아일랜드장	1,700,000			
아일랜드장 +	84A	파세코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050,000	아일랜드장내	



쌀냉장고	84B	파세코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400,000	쌀냉장고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설치비용 반영 아일랜드장내 쌀냉장고 옵션 추가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설치비용 반영
	아일랜드장 + 전기오븐 + 쌀냉장고	84A	LG전자/파세코	광파오븐(MZ385EBTA) +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430,000
삼성전자/파세코			전기오븐(NQ36A6555CK) +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400,000	
SK매직/파세코			스팀오븐(EON-B401SA) +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700,000	
84B		LG전자/파세코	광파오븐(MZ385EBTA) +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780,000	
		삼성전자/파세코	전기오븐(NQ36A6555CK) +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2,750,000	
		SK매직/파세코	스팀오븐(EON-B401SA) + 쌀냉장고(PRR-B068EN) + 아일랜드장	3,050,000	

- ▶ 주택형별 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후면 및 측면, 천장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냉장고장 옵션 선택후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간은 고객님의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84A형의 경우 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가구 측면에 경량벽체가 추가로 설치되며, 실외기실 전등 스위치(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다용도실 스위치)설치위치가 변경됩니다.
- ▶ 84B형의 경우 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 옆 벽면이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으로 마감되며, 가구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아일랜드장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측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전자레인지(전기오븐) 전원은 전용회로로 구성되며, 아일랜드장 옵션 미선택 세대 및 비확장세대는 분전반내 예비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판매가격은 전자레인지, 밥솥,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84A,84C 타입은 발코니 확장시 확장기본형 주방가구에 양념서랍장이 설치되며, 84B타입의 경우는 확장기본형 주방가구내 설치공간 부족으로 옵션선택시 설치되는 아일랜드장에 양념서랍장이 설치됩니다.
-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 전기오븐, 쌀냉장고 선택시 가구장 내 배선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 84A형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세대는 냉장고장 및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위치가 확장 기본형 세대와 달리 반대편으로 변경되며, 가구 내부구성이 좌우가 변경됩니다. (추가선택품목인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빌트인 전기오븐, 쌀냉장고 설치위치 및 제품별 좌우변경 포함)
- ▶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비스포크 냉장고 및 오브제 냉장고는 냉장고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한 품목임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냉장고장 옵션 선택후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설치시 삭제되는 부위는 비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선택시 팬트리장이 동시에 설치(개별 옵션선택 불가)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GRA-BI322H 제품만 가스1구 쿡탑 설치로 인해 가스가 연결됩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기본 설치 4구 가스쿡탑과의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가스쿡탑 및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전원공급은 전용으로 구성됩니다.
-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전기오븐은 전 주택형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하며, 추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아일랜드장내 전자레인지 수납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쌀냉장고는 84A, 84B타입의 경우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하며, 추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아일랜드장내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84C타입은 옵션선택시 확장기본형 주방가구내 빌트인 쌀냉장고가 설치되며, 설치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쌀냉장고 옵션 선택시 측면 가구내부에 쌀냉장고용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 냉장고는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합니다. 아울러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현관 중문	전주택형	현관	3연동 슬라이딩 ( 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	1,750,000	양방향 댄핑, 화재감지기 포함가격 / 경량벽 삭제비용 차감

- ▶ 현관 중문 옵션 선택시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을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벽패널 또는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천장물딩, 가구, 디딤판, 벽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건식벽으로 마감됩니다.
- ▶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불박이 가구류

[단위 : m²,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오픈형 신발장	84A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5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84B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5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손빨래 하부장	84C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500,000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차인액 반영	
	84A	다용도실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650,000		
	84B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650,000		
	84C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650,000		
침실1 불박이장 워크인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84A	침실1	워크인 드레스룸내 시스템 선반 추가	110,000		택 1
			와이드 화장대(W1,4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 + LG스타일러(5벌용) + 오픈형 선반장 + 벽패널 마감	7,200,000	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 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84B		워크인 드레스룸내 시스템 선반 추가	300,000		택 1
			워크인 드레스룸내 책상 설치	950,000		
			와이드 화장대(W1,4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 + LG스타일러(5벌용)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설치 + 시스템선반) + 벽패널 마감	6,200,000	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 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와이드 화장대(W1,4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 + LG스타일러(5벌용) + 책상 + 벽패널 마감	6,200,000	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 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84C	와이드 화장대(W1,400/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 + LG스타일러(5벌용) + 벽패널 마감	4,650,000	기본제공 화장대 및 워크인 드레스룸(가구 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 선반)과의 차인액 반영			

**침실 및 거실 가변 선택세대 옵션선택 불가 (전주택형 침실2 불박이장 및 84C타입 복도 화장대)**

침실2 불박이장	84A (확장기본형 세대)	침실2	불박이장	1,100,000	경량벽 포함	
	84B (확장기본형 세대)		불박이장	1,100,000	경량벽 포함	
	84C (확장기본형 세대)		불박이장	1,100,000	경량벽 포함	
복도 화장대	84C (확장기본형 세대)	복도	입식형 화장대	1,100,000	기본제공 침실3 드레스룸 공간 및 시스템 선반 크기 축소에 따른 차인액 반영	

- ▶ 불박이 가구 옵션선택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 하였습니다.
- ▶ 불박이 가구 옵션 미선택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불박이장 규격은 평면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불박이 가구 옵션 선택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걸이 및 다용도력은 설치되지 않으며,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 퀵라인 선반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으로 설치되며, 오픈형 신발장 판매가격 산정시 기본형 신발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다용도실 손빨래 하부장은 옵션 선택시 인조대리석 상판(MMA)로 마감되며,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 손빨래 싱크볼 및 수전 설치위치 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침실2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가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가구 측면에 설치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 측면 경량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 전 주택형 침실 및 거실 가변형 평면 선택세대는 침실2 불박이장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의류관리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각 타입별 침실1 및 워크인 드레스룸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상부 LED 조명,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 감지기 등)
- ▶ 84C타입 복도 화장대 옵션 선택시 가구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침실3에 설치된 워크인 드레스룸 크기(시스템 선반 포함)가 변경(축소)되며, 판매가격에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84C타입 복도 화장대 옵션 선택시 벽에 설치된 욕실 스위치 등의 배선기구 설치 위치가 변경됩니다.
- ▶ 84C타입 침실 및 거실 가변형(세컨 마스터룸형 /침실2, 침실3 통합형) 평면 선택세대는 복도 화장대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 불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마감재 선택형

[단위 : m<sup>2</sup>,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엔지니어드 스톤	84A	주방	주방 벽 마감 (롯데레디언스 : AM812 알파마요)	500,000	기본제공 주방벽 락패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B		주방 벽 마감 (롯데레디언스 : AM812 알파마요)	550,000	기본제공 주방벽 락패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C		주방 벽 마감 (롯데레디언스 : AM812 알파마요)	530,000	기본제공 주방벽 락패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외부창호 단열필름	84A	외부 창호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1,700,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주방/다용도실 외부창호	
	84B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1,700,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주방/다용도실 외부창호	
	84C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1,700,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3 드레스룸/주방/다용도실 외부창호	
<b>84A 타입 양방향 팬트리 선택세대 옵션선택 불가 (세라믹 패널)</b>						
세라믹 패널	84A (확장 기본형 현관 팬트리 선택세대)	거실	CALACATTA ORO (반무광)	2,9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 1
			TESSINO SMOKE PULIDO (유광)	2,900,000		
	84B		CALACATTA ORO (반무광)	2,7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 1
			TESSINO SMOKE PULIDO (유광)	2,700,000		
	84C		CALACATTA ORO (반무광)	3,10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 1
			TESSINO SMOKE PULIDO (유광)	3,100,000		
<b>84A, 84B 타입 거실, 침실2 통합형 평면 선택세대 옵션선택 불가 (디자인 패널 및 우물천장 조명)</b>						
디자인 패널	84A (확장기본형 세대) (침실2,3통합형세대)	거실	거실 창호주변 벽면 + 소파 뒷벽면	5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84B (확장기본형 세대) (침실2,3통합형세대)		거실 창호주변 벽면 + 소파 뒷벽면	5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84C (전 평면 가능)		거실 창호주변 벽면 + 소파 뒷벽면	6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84A (확장기본형 세대) (침실2,3통합형세대)		거실	우물천장 시트패널 + 직간접 조명	3,000,000
84B (확장기본형 세대) (침실2,3통합형세대)	우물천장 시트패널 + 직간접 조명	3,0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 및 거실 직부등과의 차인액 반영	
84C (전 평면 가능)	우물천장 시트패널 + 직간접 조명	3,000,000		기본제공 도배 마감 및 거실 직부등과의 차인액 반영	

- ▶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또는 거실 복도 아트월에 세라믹 패널 마감을 두가지 제품 중 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라믹 패널 마감 선택시 해당 부위 기본제공 디자인월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 거실 부위 세라믹 패널 및 벽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시 거실 및 해당타입 주방, 또는 거실 복도 옵션인 아트월 세라믹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 양방향 팬트리 옵션 선택세대는 주방부위 아트월 미설치(냉장고장(옵션) 설치공간 확보로 도배마감)로 인해 거실 아트월 세라믹패널 마감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 거실 창호주변 및 소파 뒤쪽 벽면에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걸레받이 설치)로 시공됩니다.
- ▶ 본 공사시 거실 창호주변 및 뒷벽면 옵션인 디자인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A, 84B타입 침실 및 거실 가변형 중 거실, 침실2 통합형 평면 선택세대는 거실 디자인패널 마감 및 우물천장 조명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이 시트 패널로 마감되며, 우물 천장내 직부등이 삭제되고 직간접 조명으로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형 조명은 디밍제어가 가능합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 선택시 입주후 고객이 직부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 선택시 전원공급용 배전반이 현관 팬트리 또는 신발장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존 직부등 및 스위치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설치세대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 주택형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옵션은 기본 설치되는 주방벽 락패널 마감과의 차인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마감 옵션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음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시 색상 및 무늬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설치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과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과는 본 공사시 자재 발주시기 차이로 인해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전 주택형 옵션 선택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손빨래 하부장은 마감재 옵션선택이 불가능하며, 인조대리석 상판(MMA)으로만 마감됩니다.
- ▶ 외부창호 단열필름 마감은 타입별 외부창호 전체 내창 1면에 시공되며, 부위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 외부창호 단열필름 마감은 타입별 확장형 외부창호(이중창) 전체 실내측 내창 1면에 시공되며, 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시공부위 유리크기가 필름 장폭보다 클 경우 이어붙임으로 시공됩니다.
- ▶ 외부창호 단열필름은 야간에 실내 점등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복합 환풍기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격	비고	
복합 환풍기	84A	부부욕실 + 공용욕실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860,000	기본제공 욕실 환기디퓨저 및 배기팬과의 차인액 반영
	84B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860,000	기본제공 욕실 환기디퓨저 및 배기팬과의 차인액 반영
	84C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860,000	기본제공 욕실 환기디퓨저 및 배기팬과의 차인액 반영

-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동시 설치 옵션선택만 가능하며, 욕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 옵션 미선택시 욕실 안쪽에 환기 디퓨저가 설치됩니다.
- ▶ 평면 선택형 욕실 공간구성중 공용욕실 샤워부스 선택세대는 복합환풍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 선택 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II)(이하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요망).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은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개별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이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확장기본형)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I)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디엘건설주식회사

- ※ 추가선택품목(II)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II)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터닝도어 포함) 등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바닥타일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바닥배수 드레인 및 마감커버 제외), 우수선홍통
③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디자인월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현관팬트리의 벽체도장, 신발장, 현관 팬트리(가구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재료분리대(욕실포함), 경량벽체, 스위치, 콘센트, 벽부형 조명기구 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전기배관/배선
④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물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면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면처리
⑤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 락패널(벽),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수전,샤워기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 욕실환풍기, 비데(부부욕실), 스위치 및 콘센트, 수전박스 마감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 락패널, 설비수전류, 싱크볼, 렌지후드, 가스쿡탑, 자동식소화시스템, 스위치 및 콘센트 등	소방검사 관련 후드,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전기·통신배관/배선
⑦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전기배관/배선
⑧ 일반가구	신발장, 현관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 선반), 드레스룸장(가구도어/시스템선반), 불박이장(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84A	84B	84C
금액	30,148,000	30,513,000	30,027,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조명설비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관련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내의 현관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관련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조명, 스위치, 콘센트 미설치로 인한 해당 설비의 스마트홈 기능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6.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0%(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0%,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금리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입주예정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보증 취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 용자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중도금대출을 LTV 최대비율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환대출 용자 포기 확인서 미제출시 중도금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총 분양대금의 50%의 범위에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공사가 대납(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계약자는 대납한 이자총액을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까지는 실제 입주일(입주증 발급 완료 시까지))까지 시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계약서 상의 연체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으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시흥장현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 된 세대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4.22.(금))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30%	· 공고일 현재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4.22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 ('21.04.22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21.10.22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1.10.22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 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국군복지단)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4.22.(금))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잔여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4.22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21.04.22 전입 한 경우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21.10.22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21.10.22 전입 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국군복지단)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2.05.12.(목))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토지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자동차	35,57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원	10,256,501원	10,891,755원	11,527,009원
가점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원	5,760,647원	5,860,858원	6,223,860원	6,586,862원	6,949,865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원) 추가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분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단, 예비대상자는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지자체,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국방부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서울·경기·인천(장애인), 경기도(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등

### ■ 기관추천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타입	철거주택 소유자(LH)	철거주택 소유자(지자체)	장애인	장기복무 (10년이상)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남북 피해자	의사상자	다문화 가족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 기능인	우수선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합계
84A	1	1	8	1	1	2	1	1	1	3	1	1	1	23
84B	1	-	4	1	-	1	-	1	1	1	-	-	-	10
84C	1	-	4	-	1	1	1	-	-	1	-	-	1	10
합계	3	1	16	2	2	4	2	2	2	5	1	1	2	43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부동산원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05.02.(월))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4.23.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니다.

- 또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표1)지역우선공급에 따르며 동일지역 내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점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주택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위: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생애최초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주택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2015.04.23.~2022.04.22) 기간 중 출생자,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수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신혼부부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원	10,256,501원	10,891,755원	11,527,009원	12,162,263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b>신혼부부</b>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b>한부모가족</b>
2순위	① <b>예비신혼부부</b> ② <b>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b>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만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만2세 초과 만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만4세 초과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원	5,760,647원	5,860,858원	6,223,860원	6,586,862원	6,949,865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태아수 만큼 산정)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시흥시, 경기도, 기타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포함)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세대주이신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 여부는 “II. 신청기준의「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IV 신청 시 확인사항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 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④**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주택 우선 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5.12(목))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 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분양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 할 경우 추천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천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천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를 방문 또는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b>특별공급</b>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2.05.02.(월) (청약 Home : 09: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현장접수 : 10:00~14:00)
<b>일반공급</b> • 1순위 • 2순위	2022.05.03.(화) (09:00~17:30)  2022.05.04.(수) (09:00~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주택전시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은행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은행 영업시간 내)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약 신청자는 방문예약제 또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dlcon-apt.co.kr>)을 통한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실물 유닛을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① 주택전시관 입장 전 및 주택전시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② 주택전시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③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④ 주택전시관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전신소독기, 손소독제 등)
- ⑤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 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09: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현장접수,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처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은행 영업시간 내)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전시관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li> <li>·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li> <li>·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주민등록표등본 1통</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시흥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자 및 시흥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는 "기타경기",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순위를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공급계약 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2.05.12.(목)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2.05.13.(금)~05.18(수) 10:00~17:00	2022.06.20.(월)~06.24.(금) 10:00~17:00	추후 일정 분양 홈페이지 고지 (https://www.dlcon-apt.co.kr)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주택전시관 ※ 상기 장소는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분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 될 경우 분양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계약체결장소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5.12.(목)~2022.05.21(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5.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현장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 2022.05.13.(금) ~ 05.18.(수), 예비입주자 : 추후 별도 고지 예정)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 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b>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③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⑨ 단신부임 입증서류(해외 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⑩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사권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표6>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b>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b>시공사 홈페이지 및 계약체결장소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b>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	○	④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 서류	대상자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⑨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⑩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 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장소에 비치)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체결장소에 비치)	
	○	⑥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⑥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체결장소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체결장소에 비치)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7>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③ 대리인 신분증, 인감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표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본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해당직장/세무서
--	--	------------

###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 가능)
	④ 실거래신고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홈페이지(www.dlcon-apt.co.kr) 게시 예정]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인지세 납부 여부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계획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구 여건

-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2호, 2021.12.31)로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지구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의 서측 6km 거리에 배곧신도시, 북측 1km 거리에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5km 거리에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측 5km지점에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첨단R&D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도시개발구역 등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 내 서해선 시흥능곡역, 시흥시청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9.09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시흥~여의도)이 착공하여 국가철도공단 사업관리 및 민간사업시행자 넥스트레인에서 사업 진행중입니다.
- '시흥장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8차)'에 따라 지구 남측으로 자족시설(자족시설의 허용용도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 아목의 공장 등), 공공청사, 블럭형 단독주택 부지, 업무시설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부지의 개발 등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행복주택, 민간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지구내 건축시설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 사업자의 설치계획 및 기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BL 단지의 초등학생은 한여울초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교의 경우 장곡중학교(시흥가온중, 응곡중, 장곡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군)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발 규모 및 시기 등이 변경될 경우, 학생배치를 위해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과 재(추가)협의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는 시흥시 전지역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 단지 동측 약 300m 이내에 한여울초등학교가 위치합니다. 입학학생들이 통학 시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별도 육교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통학버스 운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통학구역 및 학군의 경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공공청사는 시청(준치), 경찰서(준치) 등이 있으며, 추후 해당관청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하천 2개소(장곡천, 장현천)가 있고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흥장현지구 밖 서측 야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 및 철탑은 현재와 같이 준치(지중화계획 없음)되는 전기시설물이며, (네이버 위성지도 기준)1001동 및 1002동 대지경계에서 송전탑과의 최단거리는 약 350m, 1003동 및 1004동 대지경계에서 약 450m로 전자파 등에 예민한 사람의 경우 이에 따른 신체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경관 등에 불편 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업지구 내는 송전지중화를 위한 인입철탑 등 전기시설물 2개소 및 지중선로가 설치될 예정임. 또한, 사업지구 외곽 구간 사유지 구간 내 다수의 경작지, 묘지 등이 위치하여 있으며, 당해 아파트 북·동측에 위치한 저류지 및 하천에는 평상시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송전철탑 및 고압송전선로가 있으므로 본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필히 현장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동측 약 100m 거리에 자동차 공업소 및 공구상점 등 산재하며, 약 260m 거리에 자동차 검사소, 약 280m 거리에 능곡버스 공영차고지, 약 340m 거리에 시흥능곡 수질복원센터, 약 380m 거리에 주유소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변전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시흥장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계약체결장소,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원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준공 후 현장AS 및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및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본관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ul>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이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84A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CG, 세대VR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홈페이지내 단위세대 VR(사이버 주택전시관)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별 동호라인의 조망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선기구류(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가스배관, 계량기, 입상배관, 수전 등), 세대 분전함, 각종 점검구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상품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주방TV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가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창호 유리는 사업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임)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 소화기 등은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KS조도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ul>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정해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본 아파트 인근에 동일 브랜드(편한세상) 아파트 건축계획이 추진될 경우, 본 아파트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 합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주택전시관,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단지 내외 옹벽 및 구조물(DA, 쓰레기분리수거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기타 제반시설 등)의 위치 및 이격거리는 사업승인도서, 분양 홈페이지, 공급안내, 단지배치도 및 단지모형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단지모형,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VR 및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단지모형,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옹벽의 패턴, 마감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광장,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주차장 환기구 및 각종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웨더스테이션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상구조물,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형태 등의 변경이 경미할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인접 부지의 건축물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주택단지 현장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배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실내마감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종 1층 필로티 및 지상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팬용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환기를 위한 급·배기구가 다수 존재하며, 환기구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배치도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용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 및 E/V실의 배치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주택단지 인접 건물로 인하여 사생활 및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에 의하여 일부세대에서는 시야에 특화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외부 특화에 의하여 세대내 창호 공를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li> <li>•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지모형 및 홍보자료(인터넷자료 포함), CG, 단위세대 VR, 참고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참고용으로 본공사시 달라 질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모형 및 CG등에 표현된 사업지 주변 도로, 가로수, 횡단보도, 유색포장, 안전휀스 등은 현황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준공 후 달라 질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해당없음</li> <li>-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하1층(1001동 인근휀스, 1003동 인근휀스)</li> </ul> </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측벽 매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경관디자인과 협의)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는 울타리 또는 철재난간으로 시공되며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지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공개 공지 및 인도를 점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판매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li> <li>•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 출입구 및 주변구간에 대하여 관계기관(지자체, 경찰서 등) 협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방상 공기안전매트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내 일부세대는 외부 도로보다 레벨이 낮아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부 대지 단차(동측 가로변 및 1004동 후면 등)가 발생되며,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계단 및 경사도가 설치됨.</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운전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태양광판넬, 피뢰침,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될 계획입니다.</li> <li>• 아파트 각 동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및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치도상의 필로티 위치는 동별마다 상이하며, 1개층 필로티로 설치 됩니다.</li> <li>• 각 주동의 필로티에는 세대 진입을 위한 출입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필로티와 인접한 세대는 보행자의 이동에 의한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에 설치된 승강기의 인승 및 대수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며, 승강기의 운행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기중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li> <li>• 주거동의 공용홀(엘리베이터 홀)의 창호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휀스 및 기전실(1003동, 1004동 지하층)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과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ul>
부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관리사무소 제외)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내 외부시설(놀이터, 휴게점터)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001동, 1002동의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 라운지카페, 키즈스테이션,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며 이용자의 사용 및 장비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다목적실(CS센터)은 준공시 입주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활용되며, 활용기간 동안(사용기간 변경 가능)은 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 활용기간 후 입주민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됩니다.</li> <li>• 단지 지하1,2층 및 지상1~2층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또는 근린생활 시설등 각 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2개층으로 구성되며,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0m 이상,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택배차량진입 불가), 지하2층 2.3m(택배차량 진입 불가), 주차면은 2.1m 이상입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진출입이 설치되는 주변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차량의 진출입시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휀스 및 기전실(1003, 1004동 지하층)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과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환기/채광을 위하여 주동에 인접하여 천장 및 DA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구조상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실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1층에는 계절창고가 세대수의 약 13% 설치되며, 각 동별 계절창고의 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창고는 각 세대별로 지정되지 않으며, 입주후 자체 내규에 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li> <li>•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ul>
주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출입구 1개소는 복측 도로에 위치하며, 진입2차로, 진출1차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li> <li>•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의 출입문과 에어커튼,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패널,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이나 상부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04동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주차 3대, 조업주차 1대, 공유차량주차 1대)이 설치되어 있어 매연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지하PIT 또는 헬룸에는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CCTV설치 위치는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카 내부, 아파트 지하층·1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004동 인근 지하 발전기실에는 전기안전공사 정검 년 1회 및 관리사무소의 비정기적 발전기의 시운전시 D.A를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li> <li>• 1004동 인근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li> <li>•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li> <li>•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주방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무선AP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실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li> <li>•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발코니 확장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외부골조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li> <li>• 외부창호가 설치 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 중 84A, 84C타입의 경우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84B의 경우 다용도실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 됩니다.</li> <li>•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천장구간 배관으로 마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li> <li>•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li> <li>•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 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및 가구가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장비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등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는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에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디자인 패널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타일, 주방벽 락패널,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및 일반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볼에 설치되는 음식을 쓰레기 탈수기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 관계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의 바닥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물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 침실에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패널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스위치(일괄소등 스위치 포함),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등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상고 내부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창고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 및 삭제 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1(안방)벽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침실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다용도실 빨래건조대, 거실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일랜드장(추가선택품목)의 위치이동은 지양하시기 바람에, 부득이하게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과 다용도실에는 배관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세면기 하부장 등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디퓨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추가선택품목)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및 목창호,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도어 등)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스토퍼, 손끼임 방지장치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침실등에 설치되는 커텐박스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락패널 마감이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쌀냉장고 등)은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안내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안내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욕실선반), 엔지니어드스톤류(현관디딤판, 주방상판, 화장대 상판 등)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수량 및 소비전력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홀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제외),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거실 디자인월 및 복도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실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우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시공 미포함 항목이며,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 유리는 주택전시관용임)
- 주방가구 상판의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 1면은 시트 랩핑으로 마감되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등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외부창호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됩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실 바닥 및 천장 높이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 및 렌지후드용 팬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주방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 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저,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약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팬던트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 미 선택”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침실에는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에어컨 설치 시 벽체 고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며 입주자분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콘센트, 스위치(일괄소등 스위치 포함),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등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발코니/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세대 인접세대(상하좌우)의 확장의 경우 비확장세대에서 단열로 인한 발코니 면적 및 층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벽체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에는 개폐형 방충망이 설치되며, 그릴창 및 방충망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디자인 및 손잡이 모양, 개폐작동 방식이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시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터닝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됩니다.</li> <li>•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류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인 세대를 제외한 2층 이상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와 세대 환기장치가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li>•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발코니,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설치된 세탁수전, 배수구, 천장 점검구 등의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창호 유리는 사업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li> <li>• 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팬트리 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납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 분전함은 침실1(안방)벽에 노출되어 시공되며,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과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랜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주방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li> <li>•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저,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약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120m/min, 옥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여부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CCTV설치 위치는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카 내부, 아파트 지하층·1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본 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004동 인근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 1층~3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비확장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li>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는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 및 일부 층에는 축벽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li> <li>• 스마트홈 2.0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li> <li>•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1동, 1002동, 1003동, 1004동 옥상에 설치되며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li> <li>•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위성 및 안테나는 1002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는 1004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3개소, 완속충전기 10개소가 설치되며, 수량 및 설치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무인택배 시스템은 세대수의 약 15%가 지하주차장내 동별 설치됩니다. (냉동, 냉장 제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 및 최상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시 각 세대 내부에는 소방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장비가 설치됩니다.</li> <li>문주 설치 시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희망시 인허가권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li> <li>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li> </ul>
건물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3층이하) 석재(일부구간 및 코아부분 제외)이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됩니다.</li> </ul>
단지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등에 따라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통학대책 및 통학안전 관련 사항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시흥교육지원청 및 시흥시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사업지 남측에는 업무시설, 블록형단독주택, 자족시설(자족시설의 허용용도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1호 아목의 공장 등), 공공시설 용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본 사업지 주변 도로에 설치 된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휀스(보차도경계휀스, 무단횡단방지 휀스, 중앙분리 휀스 등),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도로 유색포장, 가로등, 수목 등은 준공시 인허가청과 협의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5. 내진성능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해당없음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도여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div> <p>1. 공동주택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 신청자 : 시흥도시공사 3. 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 4. 성능등급</p> <p>가. 소출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경량구조물 차단성능</td> <td>★★★★</td> <td>17. 단열재 노숙성</td> <td>-</td> </tr> <tr> <td>2. 중량구조물 차단성능</td> <td>★★★★</td> <td>18. 자연채광 노숙성</td> <td>★★★★</td> </tr> <tr> <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 <td>★★★★</td> <td>19. 경계면적률</td> <td>★★★★</td> </tr> <tr> <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 대면경계의 소음도</td> <td>★</td> <td>20. 비효율 조명</td> <td>★★</td> </tr> <tr> <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 <td>★★★★</td> <td>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용 계류의 적용</td> <td>★★★★</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변성</td> <td>★</td> </tr> <tr> <td>3. 수리유지성 용이성</td> <td>★</td> </tr> <tr> <td>4. 수리유지성 용이성</td> <td>★★</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 <td>-</td> </tr> <tr> <td>2. 과도한 지하채굴 방지</td> <td>-</td> </tr> <tr> <td>3. 도랑사 절설도랑 과소화</td> <td>-</td> </tr> <tr> <td>4. 일조권 관리방식 대면적 대당성</td> <td>-</td> </tr> <tr> <td>5. 에너지 성능</td> <td>★★★★</td> </tr> <tr> <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용이</td> <td>★★★★</td> </tr> <tr> <td>7. 전-제설에너지 적용</td> <td>★★★★</td> </tr> <tr> <td>8. 차량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td> <td>★★★★</td> </tr> <tr> <td>9. 온천수 보호를 위한 특성설비의 사용 여부</td> <td>★</td> </tr> <tr> <td>10. 환경성능 인증(LEED)의 사용</td> <td>★★</td> </tr> <tr> <td>11. 친환경 소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2. 자원순환 자원의 사용</td> <td>★★</td> </tr> <tr> <td>13. 유해물질 적량 사용</td> <td>★★</td> </tr> <tr> <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 <td>★</td> </tr> <tr> <td>15. 재활용 자재의 보편적 사용</td> <td>★★★★</td> </tr> <tr> <td>16. 명품 관리</td> <td>-</td> </tr> <tr> <td>17. 명품 인증제도의 적용</td> <td>★★★★</td> </tr> <tr> <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단거리와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td> </tr> <tr> <td>3. 사적자동차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td> <td>★★</td> </tr> <tr> <td>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안전행로의 환경관리 계획</td> <td>★★★★</td> </tr> <tr> <td>6. 운동유기관리 도시 및 배후지 제공</td> <td>★★★★</td> </tr> <tr> <td>7. 사용자 편의성 제공</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9. 단위대지의 사회적 가치제공</td> <td>★</td> </tr> <tr> <td>10. 공동주택의 사회적 가치제공</td> <td>★</td> </tr> <tr> <td>11. 커뮤니티 기반 및 생활공간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 <td>★</td> </tr> <tr> <td>13. 세대별 독립 화장실 시스템</td> <td>★★</td> </tr> <tr> <td>14. 방음단절 단절</td> <td>★★</td> </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감시 및 경보설비</td> <td>★★</td> </tr> <tr> <td>2. 대피경로</td> <td>★★</td> </tr> <tr> <td>3. 대피경로</td> <td>★</td> </tr> <tr> <td>4. 화재대응 계획</td> <td>★★★★</td> </tr> <tr> <td>5. 화재대응 계획</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2월 23일 <b>한국부동산원</b></p>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구조물 차단성능	★★★★	17. 단열재 노숙성	-	2. 중량구조물 차단성능	★★★★	18. 자연채광 노숙성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19. 경계면적률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 대면경계의 소음도	★	20. 비효율 조명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용 계류의 적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유지성 용이성	★	4. 수리유지성 용이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채굴 방지	-	3. 도랑사 절설도랑 과소화	-	4. 일조권 관리방식 대면적 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용이	★★★★	7. 전-제설에너지 적용	★★★★	8. 차량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온천수 보호를 위한 특성설비의 사용 여부	★	10. 환경성능 인증(LEED)의 사용	★★	11. 친환경 소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원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적량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 자재의 보편적 사용	★★★★	16. 명품 관리	-	17. 명품 인증제도의 적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거리와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사적자동차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안전행로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동유기관리 도시 및 배후지 제공	★★★★	7. 사용자 편의성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대지의 사회적 가치제공	★	10. 공동주택의 사회적 가치제공	★	11. 커뮤니티 기반 및 생활공간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세대별 독립 화장실 시스템	★★	14. 방음단절 단절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시 및 경보설비	★★	2. 대피경로	★★	3. 대피경로	★	4. 화재대응 계획	★★★★	5. 화재대응 계획	★★★★	<div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div>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td> <td>인증 번호 : 22-주-에-11-0047</td> </tr> <tr> <td>준공연도 : 20250331</td> <td>평가자 : 김상훈</td> </tr> <tr> <td>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td> <td>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td> <td>분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td> </tr> <tr> <td>면적 : 69797.5087㎡</td> <td>유효기간 : 시공완료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추정 용도 : 공동주택</td> <td>인증 등급 : 1+등급</td> </tr> <tr> <td>설계자 : (주)범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td> <td></td> </tr> </table>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요량(k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r> <td>년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35.5</td> <td>45.2</td> <td>34.7</td> <td>7.7</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5.7</td> <td>26.3</td> <td>5.9</td> </tr> <tr> <td>조명</td> <td>15.1</td> <td>13.1</td> <td>36.1</td> <td>6.2</td> </tr> <tr> <td>환기</td> <td></td> <td>4.6</td> <td>13.3</td> <td>2.3</td> </tr> <tr> <td>합계</td> <td>81.3</td> <td>98.8</td> <td>110.4</td> <td>22.1</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의 난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정확한 V]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됩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라.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 인증의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2월 22일 <b>한국부동산원</b></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인증 번호 : 22-주-에-11-0047	준공연도 : 20250331	평가자 : 김상훈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분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69797.5087㎡	유효기간 : 시공완료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추정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 1+등급	설계자 : (주)범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년방	0.0	0.0	0.0	0.0	난방	35.5	45.2	34.7	7.7	급탕	30.7	35.7	26.3	5.9	조명	15.1	13.1	36.1	6.2	환기		4.6	13.3	2.3	합계	81.3	98.8	110.4	22.1	<div style="text-align: center;"><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div>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td> <td>인증 번호 : 2022-055</td> </tr> <tr> <td>건축주 : 시흥도시공사</td> <td>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준공(예정)일 : 2025.03.31</td> <td>유효기간 : 2022.02.23. ~ 시공완료일</td> </tr> <tr> <td>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td> <td>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 2022.02.23</td> </tr> <tr> <td>층 수 : 지하2층, 지상25층</td> <td>인증 등급 : 우형(그린3등급)</td> </tr> <tr> <td>면적 : 70,275.7506㎡ (평가면적: 69,991.4764㎡)</td> <td>인증 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td> </tr> <tr> <td>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td> <td>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설계자 : (주)범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td> <td>한국부동산원 제 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 2019-248호, 인증기준 분량제치(2020.04.30)</td> </tr> </table> <p>라.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등급 ★★★☆☆</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2월 23일 <b>한국부동산원</b></p> </div>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인증 번호 : 2022-055	건축주 : 시흥도시공사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 2025.03.31	유효기간 : 2022.02.23. ~ 시공완료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 2022.02.23	층 수 : 지하2층, 지상25층	인증 등급 : 우형(그린3등급)	면적 : 70,275.7506㎡ (평가면적: 69,991.4764㎡)	인증 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설계자 : (주)범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제 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 2019-248호, 인증기준 분량제치(2020.04.30)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구조물 차단성능	★★★★	17. 단열재 노숙성	-																																																																																																																																																																																								
2. 중량구조물 차단성능	★★★★	18. 자연채광 노숙성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19. 경계면적률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 대면경계의 소음도	★	20. 비효율 조명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용 계류의 적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유지성 용이성	★																																																																																																																																																																																										
4. 수리유지성 용이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채굴 방지	-																																																																																																																																																																																										
3. 도랑사 절설도랑 과소화	-																																																																																																																																																																																										
4. 일조권 관리방식 대면적 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용이	★★★★																																																																																																																																																																																										
7. 전-제설에너지 적용	★★★★																																																																																																																																																																																										
8. 차량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온천수 보호를 위한 특성설비의 사용 여부	★																																																																																																																																																																																										
10. 환경성능 인증(LEED)의 사용	★★																																																																																																																																																																																										
11. 친환경 소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원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적량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 자재의 보편적 사용	★★★★																																																																																																																																																																																										
16. 명품 관리	-																																																																																																																																																																																										
17. 명품 인증제도의 적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거리와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사적자동차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안전행로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동유기관리 도시 및 배후지 제공	★★★★																																																																																																																																																																																										
7. 사용자 편의성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대지의 사회적 가치제공	★																																																																																																																																																																																										
10. 공동주택의 사회적 가치제공	★																																																																																																																																																																																										
11. 커뮤니티 기반 및 생활공간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세대별 독립 화장실 시스템	★★																																																																																																																																																																																										
14. 방음단절 단절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시 및 경보설비	★★																																																																																																																																																																																										
2. 대피경로	★★																																																																																																																																																																																										
3. 대피경로	★																																																																																																																																																																																										
4. 화재대응 계획	★★★★																																																																																																																																																																																										
5. 화재대응 계획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인증 번호 : 22-주-에-11-0047																																																																																																																																																																																										
준공연도 : 20250331	평가자 : 김상훈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분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69797.5087㎡	유효기간 : 시공완료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추정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 1+등급																																																																																																																																																																																										
설계자 : (주)범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년방	0.0	0.0	0.0	0.0																																																																																																																																																																																							
난방	35.5	45.2	34.7	7.7																																																																																																																																																																																							
급탕	30.7	35.7	26.3	5.9																																																																																																																																																																																							
조명	15.1	13.1	36.1	6.2																																																																																																																																																																																							
환기		4.6	13.3	2.3																																																																																																																																																																																							
합계	81.3	98.8	110.4	22.1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인증 번호 : 2022-055																																																																																																																																																																																										
건축주 : 시흥도시공사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 2025.03.31	유효기간 : 2022.02.23. ~ 시공완료일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내 B10BL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 2022.02.23																																																																																																																																																																																										
층 수 : 지하2층, 지상25층	인증 등급 : 우형(그린3등급)																																																																																																																																																																																										
면적 : 70,275.7506㎡ (평가면적: 69,991.4764㎡)	인증 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설계자 : (주)범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제 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 2019-248호, 인증기준 분량제치(2020.04.30)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총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6,084,016
		기간이자	1,696,944
		필요적 경비	1,732,355
		그 밖의 비용	9,066,716
		계	78,580,031
		토공사	2,831,352
건축비	공사비	토공사	2,831,352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수·오수공사	654,273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6,719
		도로포장공사	362,366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2,388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009,655
			부대시설공사	306,815
			계	7,193,568
			공통가설공사	1,870,569
			가시설물공사	4,213,354
			지정 및 기초공사	2,096,149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25,631,247
			용접공사	-
			조적공사	2,166,985
			미장공사	1,758,436
			단열공사	2,905,767
			방수·방습공사	2,528,460
			목공사	2,940,445
			가구공사	1,111,694
			금속공사	776,992
			지붕 및 홈통공사	165,924
			창호공사	3,540,163
			유리공사	1,417,594
			타일공사	2,650,766
			돌공사	2,763,488
			도장공사	1,199,463
			도배공사	779,003
			수장공사	2,550,315
			주방용구공사	-
			그 밖의 건축공사	669,418
			계	63,736,232
			급수설비공사	1,454,704
			급탕설비공사	974,172
			오·배수설비공사	1,632,620
			위생기구설비공사	871,858
			난방설비공사	1,288,506
			가스설비공사	495,448
			자동제어설비공사	344,061
			특수설비공사	242,219
			공조설비공사	899,986
			계	8,203,574
			전기설비공사	5,385,168
			정보통신공사	2,969,392
			소방설비공사	4,076,623
			승강기공사	1,610,518
			계	14,041,701
			일반관리비	2,683,518
			이윤	4,798,755
			계	7,482,273
			설계비	2,270,000
			감리비	3,681,230
			일반분양시설경비	850,364
			분담금 및 부담금	385,617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831,389
			계	8,018,600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205,183,130			

###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소계	초과복리 시설 설치비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충고증가 공사비	법령개정 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사업승인 부가조건 가산비	소계
							공동주택성 능등급	홈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특등급	에어콘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696,944	1,732,355	2,448,273	5,866,180	752,263	12,496,015	967,797	1,735,624	3,970,441	1,299,615	1,153,691	2,931,223	1,740,513	521,622	234,960	3,371,670	17,927,156	

###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감리회사
시흥 장현지구 B-10블록	시흥도시공사 (140-82-00212)	디엘건설 주식회사 (102-81-34561) ㈜이하임건설 (553-87-00733)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27-81-60942)

### 9.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현장접수처(당첨/예비자 서류접수)



- 위치안내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 현장방문시 주차공간이 없으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2. 05. 13.(금) ~ 2022. 05. 18.(수)
- 운영시간 : 10:00~17:00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홈페이지

분양문의

■ 주소 : [PC] <https://www.dlcon-apt.co.kr>

**031-311-0431 (10:00 ~ 17:00)**